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리 시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4. .  
제출자 : 구리시장

## 1. 제안이유

음악창작소 신규 사업 발굴 및 확장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 및 방법을 명시하는 한편, 음악창작소의 정의를 수정하고 기능을 신설하여 시민참여 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음악창작소 정의에 시민 문화향유를 위한 목적을 추가함.

(안 제3조)

나. 음악창작소의 기능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창작 및 공연 활동 지원을 신설함. (안 제4조)

다. 음악창작소의 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 물품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참조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 붙임 2 참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관계 법령 및 조례 개정 이력

관계 법령 이력	해당 조례 제·개정 이력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진흥법 - 1972. 08. 14. 제정 - 2020. 12. 08. 일부개정 - 2020. 12. 22. 일부개정	<input type="checkbox"/>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2021. 12. 21. 제정 - 2022. 04. 08. 일부개정 - 2023. 04. 13. 일부개정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붙임 3 참조

- 예고기간 : 2024. 2. 28. ~ 3. 19.(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결과 : 붙임 4 참조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사전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소비자정책심의 : 심사대상 아님

○ 그 밖의 부서협의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5 참조

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5) 경기도 관련 부서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구리시 조례 제 호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의” 를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으로 한다.

제4조에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창작 및 공연 활동 지원

6. 그 밖에 음악산업 발전 및 시민 문화향유를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입 안 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과장 조 영 훈
	팀 장 직위·성명	예술팀장 엄 원 용
	선임주무관 성명·전화번호	지방공업주사 오호진 550-2727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음악창작소란” 지역 음악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음악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u>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의 거점공간을 말한다.</u></p> <p>2. ~ 3. (생략)</p>	<p>제3조(정의) ----- -----.</p> <p>1. ----- ----- ----- <u>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u>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능) 음악창작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u>&lt;신설&gt;</u></p> <p>3. ~ 5. (생략)</p> <p>6. <u>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u></p> <p><u>&lt;신설&gt;</u></p>	<p>제4조(기능)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2의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창작 및 공연 활동 지원</u></p> <p>3.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 음악산업 발전 및 시민 문화향유를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u>제4조의2(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u></p>

행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붙임 2****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관계 법령]****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현행 조례]****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4.13] (일부개정) 2023.04.13 조례 제210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음악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구리시 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라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동구릉로 136번길 57(인창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악창작소”란 지역 음악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음악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의 거점공간을 말한다.
2. “기본시설”이란 멀티스튜디오, 믹싱·마스터링실, 소형녹음실, 퍼포먼스실, 1인 미디어실, 편집실, 교육실, 사무실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녹음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방·난방시설과 그 밖의 기본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제4조(기능) 음악창작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창작소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2.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3.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
4. 음악창작소 추진사업 홍보 및 마케팅, 전문교육과정 기획
5. 음악창작소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6.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

제5조(관리·운영) ① 음악창작소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악창작소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사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음악창작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음악창작소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음악창작소 사업 추진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구리시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제7조의3(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음악창작소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음악창작소 관련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음악창작소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음악창작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8.]

제7조의4(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지명하는 4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공연·대중음악 분야 전문가
3. 문화예술 기획, 홍보, 마케팅 분야 전문가
4. 지역 문화예술 단체 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

[본조신설 2022.4.8.]

제7조의5(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7조의6(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7조의7(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7조의8(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제7조의9(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음악창작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음악창작소 업무 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8조(음악창작소의 사용) ①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수강료 및 감면) 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1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23.4.13.>

⑤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제10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주취 상태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하여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한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국가, 시 주최 사업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부터 7일 전에 신청인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예정시간 24시 이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납부된 수강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제13조 삭제 <2023.4.13.>

부 칙 <조례 제1995호,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34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02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리시 음악창작소 사용료 및 수강료(제9조제1항 관련)

###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준	사용료	사용기준
멀티스튜디오	시간당	40,000	※ 기본 1시간 사용으로 한다. (다만, 기본시간 미만 사용 시에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예약이 없을 시 협의 하에 추가연장 가능 ※ 멀티스튜디오, 믹싱·마스터링실, 녹음실은 상주 엔지니어와 진행 ※ 1인 미디어실은 연습실(노래,악기) 과 미디어작업 공간으로도 사용 가능
믹싱· 마스터링실	시간당	50,000	
녹음실			
1인 미디어실	시간당	10,000	
퍼포먼스실	시간당	10,000	

###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분 야	사용료(1회당)	비고
음 향	15,000	멀티스튜디오
영 상	15,000	
조 명	10,000	
피아노	20,000	※ 별도 조율 필요시 사용자 부담
드럼	20,000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사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시설예약 후 30분 내 입실하지 않을 시 취소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 3. 수강료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1인 1강좌	20,000	· 교재비는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이 별도 부담한다.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 구리시 음악창작소 사용료·수강료 감면(제9조제2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 고
· 국가, 구리시가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복리증진, 공익 등을 위하여 주최·주관하는 사업	면제	사용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사용료 · 수강료
· 구리시민 또는 구리시 소재의 사업장 및 단체	100분의 40	사용료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100분의 20	사용료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참전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의상자증, 의사자유족증, 귀환용사증, 귀환용사가족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등으로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수 강 신 청 서		
수강신청 과 목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수 강 료	원	감 면 자	감면사유 :
구 비 서 류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 수강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p>본인은 음악창작소에서 실시하는 제 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p>신 청 인 (인 또는 서명)</p> <p>구리시장 귀하</p>			

---

접수번호	수 강 신 청 접 수 증		
수강신청과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 강 기 간			
<p>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구 리 시 장</p>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수강취소 신청서

### □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 과 목			
신청 인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반 환 금 액	원		
금융기관명		입금계좌	
접수담당자			

### □ 취소 사유

<p>※ 해당하는 취소 사유를 선택해주세요.</p> <p>1) 취업·창업( )</p> <p>2) 상해·질병 및 가족 병간호( )</p> <p>3) 이사( )</p> <p>4) 그 밖의 사유( )</p>
<p>※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작성해 주세요.</p>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구리시장 귀하

입법예고(증빙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부처)입법예고 ▾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로그인](#)

통합입법예고
입법제안
국민법제관
입법진행현황
도움말

통합입법예고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록

(부처)입법예고 ▾

(지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

\* 구리시 공고 제2024-348호(2024. 2. 28.)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4회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인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02.28. ~ 03.19. (20일간)
-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
-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 03. 19.까지
  - 제출처 : 구리시 문화예술과(예술팀)
  - 제출방법 :
    -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 팩스 : 031-550-2728
    - 전자메일 : randy099@korea.com

\*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 참조

📎 첨부파일
📎 음악창작소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목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 이메일 수집 거부 | 정부입법제도 소개 | 공지사항

19

■ 입법예고(결과보고)

즐거움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 구 리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결과 보고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제2024-5726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자치법구명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2. 28. ~ 3. 19.(20일간)
3.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5. 향후계획 : 구리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제출 및 구리시의회 안건 제출

붙임 구리시 음악창작소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

★주무관 **오윤진**      예술팀장 **임병중**      문화예술과장 **조영훈**      전일 2024. 3. 30.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7936      접수

우 11954    경기도 구리시 바차산로 439 (교문동)      / <http://guri.go.kr>

전화번호 031-550-2728(249    4)    팩스번호 031-550-2803    / [randy099@korea.kr](mailto:randy099@korea.kr)    / 비공개(?)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붙임 4**

**부서협의 결과**

■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감사담당관)(1/2)

협의부서	협의내용	협의결과	조치내용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해당 사항 없음
	사전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구 리 시**



수신 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결과 알림(2024-15)

1. 문화예술과-5725(2024. 2. 27.)호와 관련입니다.

2.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의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붙임 '결과통보서' 참조)  
나. 사전규제심사 결과

자치법규명	규제 사항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비 고
	신설·강화	완화·폐지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없음	없음	해당없음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감 사 담 달 기 관 준**

---

주무관 **진용희**      감사팀장 **구지영**      감사담당관 **김영준**      간담 2024. 2. 28.  
합조자 **최경준**

시행 감사담당관-2436      (2024. 2. 28.)      접수 문화예술과-5804      (2024. 2. 28.)

우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 http://www.guri.go.kr

전화번호 031-550-2074      팩스번호 031-550-8762      / jin34170@korea.kr      / 비공개(5)

청렴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감사담당관)(2/2)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자치법규명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평가담당 : (소속)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8급 (성명) 진용희  
 입안주무부서 : 문화예술과  통보(조치)일 : 2024. 02. 28.(수)  
 통보내역 : 원안동의

관련 자치법규(제정·개정안)	통보내역(개선 의견)
“별지와 같음”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은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평가 대상의 경우 특혜 유발가능성 등 부패유발 요인이 없어 원안동의함.

■ 성별영향평가(가족복지과)(1/2)

협의부서	협의내용	협의결과	조치내용
가족복지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즐거움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 구 리 시



수신 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4A경기구리016)

---

1. 경기도 구리시 문화예술과-5810(2024.2.28.)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4A경기구리016) 1부. 끝.



가 족 복 지 과 장

---

주무관 **김은영**      여성정책팀장 **박민영**      가족복지과장 **전태승**      인강 2024. 3. 6.

협조자

시행 가족복지과-8064      (2024. 3. 6.)      접수 문화예술과-6391      (2024. 3. 6.)

우 11954      경기도 구리시 마차산로 453, 여성정책센터 1층 운영사무실 (교문 / http://gur.go.kr 등)

전화번호 031-560-8827      팩스번호 031-560-8914      / jush2929@korea.kr      / 비공개(5,6)

창원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 성별영향평가(가족복지과)(2/2)

협의부서	협의내용	협의결과	조치내용
가족복지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즐거움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 구 리 시



수신 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4A경기구리016)

---

1. 경기도 구리시 문화예술과-5810(2024.2.28.)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4A경기구리016) 1부, 끝.



가 족 복 지 과 장

---

주무관	김민경	여성정책팀장	박민경	가족복지과장	진경 2024. 3. 6.
협조자				김태승	
시행	가족복지과-8064	(2024. 3. 6.)	접수	문화예술과-6391	(2024. 3. 6.)
우	11954	경기도 구리시 마차산로 453, 여성정책센터 1층 운영사무실 (교문 등)	/ <a href="http://guri.go.kr">http://guri.go.kr</a>		
전화번호	031-560-8827	팩스번호	031-560-8514	/ jush2929@korea.kr	/ 비공개(5.6)

정열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붙임 5****비용추계서****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

**나. 비용 발생 요인**

- 기념품 제공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비고
총 비용	해	당	없	음			
기존비용							
증가비용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등							

**다. 자원조달방안: 해당 없음****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장 조영훈**